

5 부: 언어 지원 안내

공중보건 정책 제 362 호 – 언어 통역 정책*의 절차 섹션, A 항: 언어 지원 서비스(LAS) 제공 안내 관련 발췌

이용자에게 1)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받고, 2)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며, 3) 통역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(수어 통역 포함).

공중 보건국은 시설 안내판, 태그 라인, 필수 게시물 및 기타 환자 자료를 통해 언어 지원 서비스(LAS)를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.

실제로 공지는 보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게재됩니다:

- 다국어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: 보건소, 진료소 및 부서 건물에 다국어 전단지 및 포스터를 디자인하여 배포합니다.
- 보건국 웹사이트: 공중 보건 웹사이트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페이지가 있으며, 다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 번역된 버튼 및 안내를 통해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공중 보건 홈페이지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는 배너를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.
<http://publichealth.lacounty.gov/language/index.htm>
- 상담 대기 전화 메시지(On-Hold Phone Messaging): 상담 대기 전화 메시지는 발신자에게 다국어로 제공되는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
- 로비 및 대기실: 공공 장소의 로비와 대기실에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포스터 및 표지판을 여러 언어로 게시합니다.